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01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☆☆

2. 조치내용

□ (수사기관 통보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

○ ☆☆은 일반투자자로서 '17.3.21.~'18.4.30. 기간 중 본인 등 총 13개 계좌를 동원하여 ○○○○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, 총 5,04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6조 제1항 제3호, 제2항 제1호, 제443조 제1항 제4·5호